

상주시 공고 제2022-1027호

「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8일

상 주 시



「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개정으로 아동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존에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이미 제정·시행 중이던 「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명을 「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」로 변경하면서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과 급식지원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조례명 개정(제명)

- 종전: 상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개정: 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

- 조례의 목적(제1조)
- 급식지원 대상자(제2조)
- 급식지원 방법 및 지원안내 (제3~4조)
- 급식지원 신청 절차 및 대상자 결정, 재조사(제5조~7조)
- 이의신청 절차 (제8조)
-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(제9조~14조)

3. 개정조례(안): 불임참조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28일까지 상주시장(참조: 가족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- 1) 일반우편: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, 상주시청 가족복지과
 - 2) 전자우편: suingood@korea.kr
 - 3) 팩스: 054-537-6674

5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가족복지과(☎054-537-7662)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 (www.sangju.go.kr→행정정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: 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